



주제발표 1

# 환경마크제도 시행현황

## 1. 환경마크제도 의의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련있는 저공해 제품에 공인기관이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체에 대해 저공해 제품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간여하면서 소비자단체, 생산업체, 학계대표등 전문가 그룹이 주관이 되어 저공해상품을 선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규제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공인기관에서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상품을 지정·표시하여 줌으로서 소비자로서 하여금 공해가 적은 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잘 팔리게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에게는 기업 스스로 저공해상품 또는 청정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 흥 식 /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녹색소비자 파워”라고도 하며, 소비자 스스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천방안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구입시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므로써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마크제도는 강제적인 규제없이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그리고 시장원리에 따라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환경시책이라 할 수 있는 점 이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 2. 제도 추진경위

- '91. 3.19: 환경마크제도 계획수립
- '91. 7.11: 환경마크 도입에 대한 공청회 개최
- '91. 9.11: 환경마크도안 공모
- '92. 2.25: 환경마크 도안확정
- '92. 4. 4: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92. 4.17: 환경마크위원회 위원 위촉
- '92. 5.15: 환경마크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92. 6. 1: 환경마크위원회 1차회의 결과 공고  
6월 1일부터 환경마크제도 시행 및  
4개 대상품목 확정
- '92. 7.31: 환경마크위원회 간담회

## 3. 실시현황

### 가. 부여절차

환경마크부여 대상상품의 제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제안에 필요한 제안서는 환경처 고시 제92-12호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환경처(기술개발과)로 제출하면 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되는 환경마크 위원회에 의안으로 부여기준 및 검사방법등을 정하여 상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제안서에는 해당제품이 동일 기능을 갖고 있는 타제품에 비교하여 성능, 제품의 질, 단계별 환경오염 저감효과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입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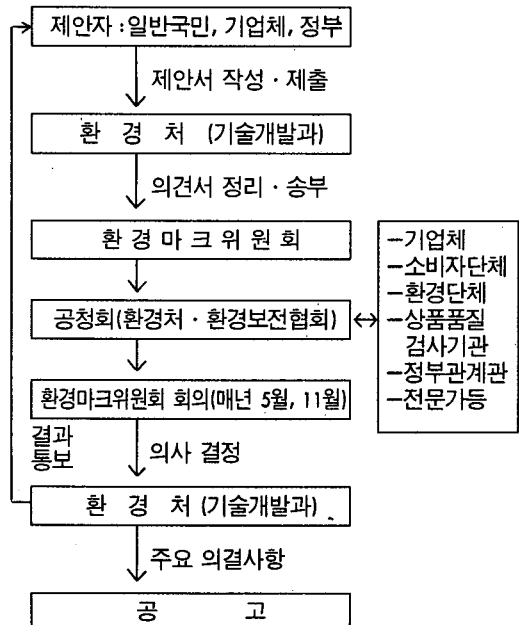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해당제품의 사진 또는 카다로그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1단계를 거쳐 대상상품군에 속하는 품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환경마크 사용을 환경보전협회 본부 11개 시·도 지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마크 인정업체 지정서를 통보받게 되면 신청업체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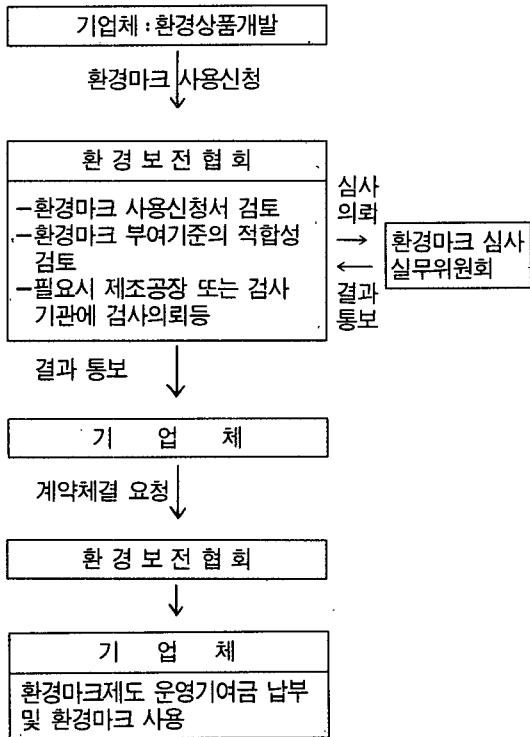
환경마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부여기준, 환경관련 법규,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법규 및 기준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단계의 대상상품선정 및 부여기준 결정 등과 2단계의 환경마크 사용신청의 부여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다음과 같이 흐름도로서 나타내었다.

### 1) 제안 및 신청절차

-제1단계: 대상상품선정 및 부여기준 결정등



-제2단계 : 환경마크 사용신청(기업체)



2) 심사 및 시험검사 방법

환경마크부여 심사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환경측면 검토사항의 항목으로서는 사용 및 폐기시의 환경문제 발생억제효과, 제조시 환경오염 방지 대책, 에너지 및 자원절약, 품질 및 안전성, 가격경쟁력 및 적정가격 여부, 환경보전에 대한 유익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상품별로 부여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고 있다. 각 대상상품별로 부여기준과 부여기준 확인방법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상상품 : 재생종이 및 그 제품

(1) 부여기준 : 재생용지 50%이상을 포함하여 제조되어야 함.

50%이상의 재생종이에는 최소한 30%의 저급지, 중급지, 크라프트지가 섞여 있어야 함.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공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여기준 확인 방법 - 서류심사

(가) 원료수불 명세서(1년분) 또는 전년도 결산서, 부여기준 확인 증명서 신제품의 경우 사유서제출(업체 자체작성)

(나) 등기부 등본(등기소)

(다) 납세완납 증명신청서(세무서)

(라)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수질, 대기, 소음진동) (관할시, 군)

(마) 일반(특정)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관할 시, 지방환경청)

(바) 환경마크 사용신청서(업체 자체작성)

(사) 환경측면 검토사항(업체 자체작성)

(아) 신청승락서(제조업체 작성)

(자) 대상상품 사진

(차)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3) 시험의뢰(제품 품질검사)

(가) KS기준에 열거된 항목 및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의 질과 규격검사

(나) 공인시험검사기관(국공립 검사기관, 공업진흥청산하 6개 검사소)

나) 대상상품 :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1) 부여기준 : 재생종이 90%이상을 포함하여 제조되어야 함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공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이하 재생종이류와 동일함.

다) 대상상품 : 페플라스틱 재생제품류

(1) 부여기준 : 혼합제 및 강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원료의 60%이상이 페플라스틱 혼합물이

나. 심사 및 부여현황

1) 총괄표

(1992. 10. 26)

구 분	신 청		처 리 결 과					
			반 송		승 인		계 약	
	업 체	상 품	업 체	상 품	업 체	상 품	업 체	상 품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10	17	-	2	4	5	6	10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10	15	-	1	4	7	7	7
페플라스틱 재생제품류	4	5	2	2	1	1	1	3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류	13	53	1	2	3	5	9	46
합 계	37	91	3	7	12	18	23	66

여야 함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한국공업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재생종이류와 동일함.

라) 대상상품: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레이류

(1) 부여기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의 I군 및 III군에 속하는 물질을 분사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머리용 스프레이, 면도용 포말) 또는 의약부의품(방취용 스프레이)으로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일 것
-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방취용 스프레이로 방향제품) 또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제품(공업진흥청고시 공산품품질검사면제대상등에 관한 규정)일 것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및 표시등이 만족한 제품일 것

(2) 부여기준 확인 방법 - 서류심사

- (가) 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증(보사부) 액화가스 충전허가증("검"자 마크) Q마크(품질보증 업체지정서, 한국화학 시험 검사소)

(나) 등기부 등본(등기소)

(다) 납세완납 증명신청(세무서)

(라)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수질, 대기, 소음진동) (관할시, 군)

(마) 일반(특정)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관할 시, 지방환경청)

(바) 환경마크 사용신청서(업체 자체작성)

(사) 환경측면 검토사항(업체 자체작성)

(아) 신청승락서(제조업체 작성)

(자) 대상상품 사진

(차)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CFCs사용유무 확인)

(3) 시험의뢰(제품 품질검사)

(가) 공인시험검사기관(국공립 검사기관, 공인청 산하 6개 검사소)

2) 계약상품

대상상품군	업 체 명	상 품 명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6개업체 10개상품)	아시아문화교류 연구 소 전 주 제 지(주)	재 돌 이 공 책 신 문 지 그 린 백 상 지 그 린 출 판 용 지 뉴 스 패 키 지 꼬 마 또 래 공 책 리 뉴 칼 라 지(공책용) 신 문 지
	중 화 물 산 (주)바른손펜시 대한 제 지(주)	무 공 해 태 이 프 무 공 해 스티 카
	중 이 실 업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7개업체 7개 상품)	(주)원경제지 (주)모나리자 부림제지공업(주) 대왕제지(주) 동신제지(주) 삼정펄프(주) (주)대한펄프	파라다이스 큐부마드 코주프글 마첼리라 리라
페플라스틱 재생제품류 (1개업체 3개 상품)	(주)강성화학	친정돌림테 결레반이 천정제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류 (9개업체 46개 상품)	태평양화학(주)	아모레미스토픽 헤어스프레이(폴로럴) (그린) 아모레미스토픽헤어무스 조토스디자인후리덤 디자인무스 리도투웨이헤어무스 리도투웨이헤어스프레이 리도쉐이빙폼 리도OK공기청향제

3) 승인상품

대상상품군	업체명	상품명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4개업체 5개 상품)	얼싸코리아 대원제지공업(주) 성림제지(주) (주)모닝글로리아	그린스티커 그린테이프 백상지 담배포장지 글로리아공책
재생용지를 포함한 종이 화장지류 (4개업체 7개 상품)	성림제지(주) 대왕제지(주)  신호제지(주) 쌍용제지(주)	마왕슈퍼 대왕슈퍼 귀록뷰티 신호미비 쌍용미바
페플라스틱 재생제품류 (1개업체 1개 상품)	유성기업	정화조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류 (3개업체 5개 상품)	(주)정산실업 애경산업(주)  (주)피어리스	백옥생헤어스프레이 애경헤어포인트스프레이 애경헤어포인트무스(소프트) 애경헤어포인트무스(하드) 피어리스다이내믹스 리취쉐이빙폼

대상상품군	업체명	상품명
	(주)럭키	차밍무스 피오레무스 랑데뷰무스 휘네스무스 차밍스프레이 피오레스프레이 피오레스프레이미스트 랑데뷰스프레이 휘네스스프레이 데뷰무스 데뷰허즈무스 살롱무스 스페시픽스무스 아르드포무스 미네르바무스 캐릭터쉐이빙폼 카이저쉐이빙폼 데뷰스프레이 데뷰센스스프레이 데뷰허즈스프레이 살롱스프레이 스페시픽스스프레이 아르드포스프레이 미네르바스프레이
한국화장품(주)	유미코스메틱(주)	쥬단학스타일링무스(하드) 쥬단학스타일링무스(슈퍼하드) 프로페셔널아모스 헤어스프레이 유미헤어시스템 슈퍼하드스프레이
	(주)피존	듀에나샤레이드 스타일링무스 듀에나스타일링무스 듀에나샤레이드 헤어스프레이 듀에나헤어스프레이 프로롱
	(주)하이캠 대왕실업(주) (주)가양	P R E S H 산도개비 나드리세리엔느 헤어스프레이
	한국존슨(주)	나드리헤어스프레이 그레이드